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시내·시외버스등 및 노인복지시설의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619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시내·시외버스등 및 노인복지시설의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	2

I. 개요

1.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61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1. 27.
- (3) 회 부 일 : 2025. 11.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가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내·시외버스 등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과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시내·시외버스등 및 노인복지시설의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1)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시내·시외 버스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2)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제1항제7호·제8호 신설).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좌석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 ----- ----- ----- ----- -----.
1. ~ 6의3. (생략)	1. ~ 6의3. (현행과 같음)
<u><신설></u>	7.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u><신설></u>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 <u>노인복지법</u> 」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생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³⁾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공항, 철도차량 객차, 선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⁴⁾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AED”)⁵⁾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 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7(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시·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4)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구 자동제세동기)

5)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에는 AED 외에도 수동심장충격기 등이 있으나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보다 용이한 AED가 공공장소 등에 보편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본 검토보고에서도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가리키는 용어로 AED를 사용하기로 함.

□ 이에 따라 AED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의 상세내역은 [표 1]과 같으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내·시외버스등 및 노인복지시설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표 1] AED 의무구비시설의 유형 및 기준

유형	기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철도차량 객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선박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공동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관광지·관광단지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되어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다중이용시설	- 철도역사 대합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1만명 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3천명 이상) - 항만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1천명 이상) - 카지노 시설(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경마장 - 경주장 -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관람석 5천석 이상) - 중앙행정기관 청사(「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시·도 청사(17개 시·도 청사)

자료: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1항,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6조의7 및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제7판)」(보건복지부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

□ 개정안은 시내·시외버스등 및 노인복지시설을 AED 의무구비시설에 새롭게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위급상황에 보다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시내·시외버스등 및 노인복지시설의 AED 의무구비를 법률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재 시내·시외버스등의 수는 총 49,465대⁶⁾로, 전체 시내·시외버스등에 AED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장비 구매 및 관리에 따른 시내·시외버스 운수업체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⁷⁾.

- 둘째,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고연령층의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표 2])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유형 및 규모가 다양하며⁸⁾, 경로당과 같이 통상 상주직원 없이 자체 운영하거나 방문요양서비스기관과 같이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도 있음.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규모뿐만 아니라 특성 및 AED의 실질적인 관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AED 의무구비시설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6) 시내·시외버스등 업종별 대수(업체 수): 시내버스 34,865대(389개), 농어촌버스 2,190대(105개), 마을버스 5,772대(450개),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6,638대(73개)

※ 업체 수: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복 기재됨.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대중교통 현황조사' 통계, 2024년 기준)

7) 전체 시내·시외버스등에 대하여 AED 구매 시 약 1,000억원 내외 소요 추정

: 시내·시외버스등 49,465대 × AED 1대당 200만원 = 989억 3,000만원

※ AED 1대당 가격은 그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200만원~250만원 내외임.

8)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개소 수(총 96,430개소)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등) 281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195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등) 70,93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 등) 18,745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 39개소,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15개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0개소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노인복지시설 현황' 통계, 2024년 기준)

[표 2] 연령별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2024년)

(단위: 건, %)

연령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건수 (100.0)	299 (0.9)	377 (1.1)	814 (2.5)	1,149 (3.5)	2,225 (6.7)	4,296 (13.0)	6,377 (19.3)	6,988 (21.2)	10,493 (31.8)

주: 연령미상(16건) 제외 통계임.

자료: 질병관리청·소방청, 2024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2025. 12.

- 셋째, 현행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의3에 규정된 시설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AED 의무구비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동 조항을 활용하여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음.

□ 한편, AED 의무구비시설을 확대하는 취지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동 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표 2] AED 의무구비시설 확대 취지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현황
(동 개정안 포함)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추가되는 AED 의무구비시설
2203226 (박주민의원)	'24.8.27.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204056 (인요한의의원)	'24.9.19.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추가되는 AED 의무구비시설
2206389 (임호선의의원)	'24.12.1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에는 응급대기실을 설치하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구비
2208726 (이광희의원)	'25.3.7.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지역축제*
2210091 (김민석의원)	'25.4.24.	- 철도역사 대합실(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포함)
2211159 (김재원의의원)	'25.6.30.	-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 공무원이 운용하는 경찰차
2214619 (문진석의원) ※ 동 개정안	'25.11.2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주: 해당 의무구비시설의 규모 등 상세한 기준을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법안에서 규정하는 경우 “*” 표기

자료: 각 법안을 바탕으로 작성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AED 의무구비시설 확대는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도뿐만 아니라 접근성, 관리 가능성 및 설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내·시외버스등의 경우, 현장대응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⁹⁾을 강화할 필요

9) 현행 「응급의료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는 응급처치 교육대상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 노인복지시설 내 AED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응급의료법령 체계를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필요
- (국토교통부) AED 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 방안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버스 특성상 응급상황 시 119 신고 후 이송이 더 신속할 수 있어 운수종사자 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삭제 필요
- (울산광역시) 국가·지자체·민간사업장의 AED 설치비용 대비 실제 사용률과 사망률 감소효과는 낮을 것으로 우려되고, 설치대수만 늘어나고 관리부실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제8호 삭제 필요
- (대한심폐소생협회) 최대 승차정원이 16~30명 내외인 버스에 AED 설치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됨.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인구집단의 특성으로 인해 AED 적용에 따른 생존률이 낮은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AED 교육이 함께 시행되어야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법률 개정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근무자를 「응급의료법」 제14조 제1항의 응급처치 교육대상에 포함할 필요

□ (대한의사협회) 법률로 AED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응급환자 생존율 제고를 담보하기 어려우며, 업체의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장비의 단순 비치보다는 관리 내실화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실제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

문 의 처
02)6788-5509